

의안번호	2203949
의 퇴 인	박충권의원
회 답 일	2024.12.10.
추 계 번호	24D375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고 함)가 됨	—
2	안 제1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8조(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등록기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22조(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3	안 제1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4	안 제18조(등록정보의 관리)	
5	안 제22조(등록정보의 공개)	

2. 상세 사유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시스템 구축(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대상 신상정보 등록·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2013년부터 신상정보 등록 업무¹⁾는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하여 운영중임
 - － 2024년 예산 기준 법무부 ‘전자감독’사업에서 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24명에게 매월 2,566천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성범죄자 통합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 2023년 12월말 기준 법무부에서 126,789명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3,725명의 신상정보 대상 인터넷 공개, 3,563명의 신상정보 대상 우편 고지를 실시함

- 현재 DB화되어 있는 대상자 수, DB용량 및 최대 DB화 가능 수
 - 시스템 등록된 대상자 수 : 14,477명
 - DB 용량 : 1.5TB / 실 사용량 : 50GB
 - 최대 DB화 가능 수 : 약 32만 명 * 1명 관리 용량을 5MB로 추정
- 저장되는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예상 비용
 - 스토리지 증설 비용 : 1TB 당 1천만원

3,015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예산 기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5억 9,400만원을 편성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현황을 법
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신상정보등록 추가 대상 및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참고자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

[참고자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²⁾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현황('23.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등록 (법무부)	인터넷 공개			우편 고지		
		계	지역별 (시·도)	수용자 및 해외출국자 등 ¹⁾	계	지역별 (시·도)	수용자 및 해외출국자 등 ²⁾
대상자 수	126,789	3,725	3,153	572	3,563	3,013	550

주 1) 수용자(486명), 해외출국자(48명), 주거불명(12명), 주거부정(26명)

2) 수용자(470명), 해외출국자(43명), 주거불명(12명), 주거부정(25명)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연도별 신규 발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18	'19	'20	'21	'22	'23
신상정보 등록자	12,959	11,635	11,513	11,163	11,111	10,355
공개대상자	955	918	733	656	612	602
고지대상자	925	882	706	635	595	585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절차

법원	대상자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 판결·통보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제출> 성폭력처벌법 (제43조)	<등록정보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5조)	<신상정보등록·관리> 성폭력처벌법 (제44조·45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2조)
○ 확정 판결 - 등록, 공개, 고지 등 ○ 대상자 통보 → 법무부, 대상자 (14일 이내)	○ 신규대상자 - 3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제출 ○ 주소 등 변경 -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제출 ※ 재소자 : 교정 기관에 제출	○ 신상정보 - 법무부에 송부 ※ 신상정보 등록 공개자 확인·관리 (3개월 단위)	○ 신상정보 - 등록시스템에 등록 ○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 여가부에 전송 (대량정보유통시스템)	○ 신상공개 - 성명, 주소, 사진, 요지 등 공개대상정보 진위확인→시스템에 공개 ①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②모바일앱 열람 ○ 우편·모바일고지 - 19세 미만 세대주, 교육기관 등 (카카오톡, 네이버, 우편)

2) 자료: 여성가족부